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133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14.
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가재울뉴타운 4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아파트의 완공(2015년 10월)을 앞두고 『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』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(조합)의 동 경계변경 신청을 받아 사업부지 내 북가좌동 일부를 남가좌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가재울뉴타운 4구역 부지 내 북가좌동 99번지 18 외 79필지를 남가좌동에 편입

나. (개정연혁표 11)을 신설함

- 북가좌동 99번지 18, 114번지 3, 5~8, 11, 13~16, 18, 23, 115번지 5, 8, 12, 17~19, 21, 23, 34, 36~37, 39~40, 42, 45, 47~54, 56, 58~61, 63~89, 91, 94, 97, 103, 114~115, 122~123, 127, 137, 139, 산11-44호를 남가좌동에 편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- 2)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- 3) 입법예고(2015. 9.23. ~ 2015.10.13.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- 4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6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개정연혁표 11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개정연혁표 11)

○북가좌동 99번지 18, 114번지 3, 5~8, 11, 13~16, 18, 23, 115번지 5, 8, 12, 17~19, 21, 23, 34, 36~37, 39~40, 42, 45, 47~54, 56, 58~61, 63~89, 91, 94, 97, 103, 114~115, 122~123, 127, 137, 139, 산11-44호를 남가좌동에 편입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(개정연혁표 11)</p> <p>○북가좌동 99번지 18, 114번지 3, 5~8, 11, 13~16, 18, 23, 115번지 5, 8, 12, 17~19, 21, 23, 34, 36~37, 39~40, 42, 45, 47~54, 56, 58~61, 63~89, 91, 94, 97, 103, 114~115, 122~123, 127, 137, 139, 산11-44호를 남가좌동에 편입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 : 동 경계를 변경하는 조례로 비용발생 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자치행정과 행정7급 민창희(330-1080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□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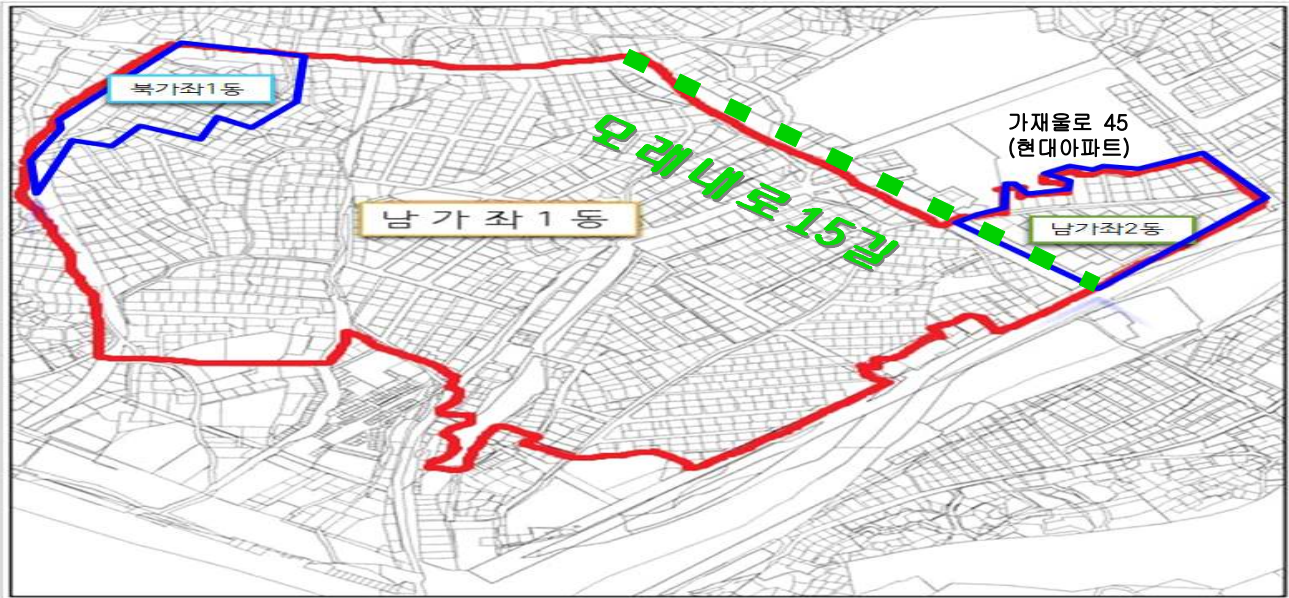
[시행 2014.11.19.] [행정자치부령 제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쳐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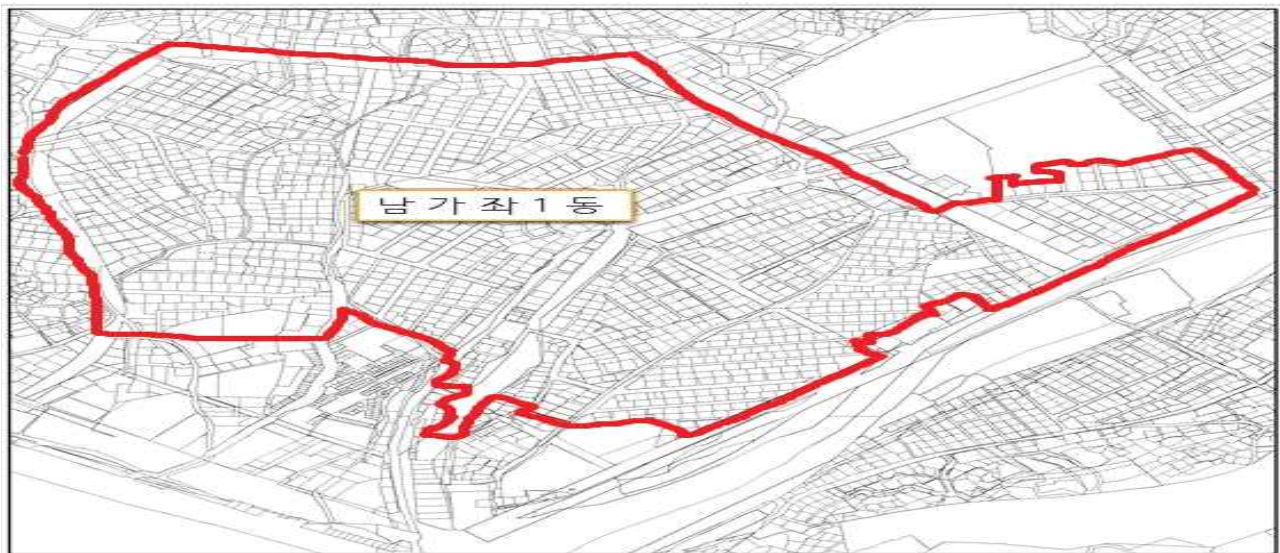
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
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3. 행정구역 변경도

▣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

변경전



변경후



— : 동 경계 — : 사업구간